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책임 연구자 : 이 창 호
 김 신 아
공동 연구자 : 이 태 영
 편여울강
 황 소 영
 백 정 원



청소년상담연구 217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4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829-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청소년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폭력인 가정폭력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성장발달, 안전을 비롯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전문가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개입을 하는 대표적인 위기개입자입니다.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청소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견 했을 때 신고 방법부터 유관기관으로의 연계과정까지의 실질적인 개입절차 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가 알아야 할 관련법과 처벌규정, 연계기관 정보 등을 담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위기개입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9세~24세 청소년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자문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황소영 박사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이 지금도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 현장 전문가의 전문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록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조하여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유기, 폭사,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대나 폭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의 세대간 전이로 표현될 만큼 가정폭력의 전염성은 강하며,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행동적, 사회적으로 발달을 저해 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폭력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현장 실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매뉴얼은 기획, 구성, 실시 및 평가의 세 단계의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기존매뉴얼 검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개입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 심층인터뷰,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존 관련기관에서 제작된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및 안내서를 검토하였고, 특징과 제한점을 찾아 본 매뉴얼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요구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센터 내 매뉴얼이 있는 경우가 41%, 없는 경우가 59%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8.2%로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2020개입 경험이 있는 전문가 14명과 가정폭력으로 가출 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 MAXQDA20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범주화 하고 핵심 의미를 도출하였다. 개입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동반문제, 발견경로 및 연계기관, 위기개입 어려움, 연계기관 협력, 제공서비스,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8개가 나타났다. 청소년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발생요인, 가정폭력 피해 후 대처, 가정폭력 피해 후 주변의 도움, 필요한 자원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구성단계에서는 모형개발과 내용구성으로 매뉴얼 구성 원리 및 조직 원리를 추출하여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매뉴얼의 구체적인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사용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이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신고 및 연계를 통한 개입절차를 제안한다. 셋째, 전체 개입과정은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와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의뢰하는 경우로 차별화 한다. 넷째, 피해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적 접근의 요소를 포함한다.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매뉴얼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와 내용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받았으며, 위기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와 질문지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현재 연계기관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자문을 받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매뉴얼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사례 발견 및 접수, 사례 판단 등 개입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관련기관 및 연계기관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상담개입이 요구되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이 다양하게 개발된 것에 비해, 청소년 대상 위기개입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소년기(9세~24세)를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현장 상담복지센터에서 활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뉴얼 개발 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시점과 본 연구보고서 진행시기의 문제로 개정된 법령이 실제로 적용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현장의 위기개입 사례 및 관련 절차를 매뉴얼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지속적인 현장 적용과 활용성 검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5

II. 선행 연구 검토 6

-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6
-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특성 11
- 3. 국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16
- 4. 국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23

III.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과정 26

- 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배경 26
- 2. 기존 가정폭력 대응 관련 매뉴얼 및 안내서 검토 28
-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도 조사 32
- 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심층 인터뷰 38

IV.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59

- 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구성 원리 59
-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초안 구성 61
-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평가 및 수정·보완 64

V. 요약 및 논의 70

- 1. 연구의 요약 70
- 2. 논의 및 제언 72

참고문헌 75

부록 81

Abstract 95

표 목차 |

표 1. 가정폭력에서의 자녀학대 유형	6
표 2. 아동학대사례유형	10
표 3. 가정폭력의 징후	13
표 4. 기존 가정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안내서	29
표 5.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6. 센터 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대한 질문	34
표 7.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 출처에 따른 장점과 단점	34
표 8.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39
표 9.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위기개입 전문가)	39
표 10. 심층 인터뷰 대상자별 조사 내용	40
표 1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42
표 1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전문가별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45
표 1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괄	62
표 1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활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질문	65
표 1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66

그림 목차 |

그림 1.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사건 발생 (우려) 시 법적 절차	18
그림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19
그림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유입되는 경로	21
그림 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절차	27
그림 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절차	63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이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정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내인 경우가 80.3%, 재학대 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95.4%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¹⁾, 2019).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 (48.1%)가 만 18세 이전,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있으며, 26.2%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과 같은 언어적 폭력 경험을 보고하였다. 가정폭력을 간접 경험한 경우로는 응답자의 33.2%가 부모 간의 욕설, 무시하는 말 등의 언어적 폭력, 12.7%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육체적 폭력을, 3.6%는 허리띠나 몽둥이 등을 사용한 심각한 육체적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는 등 자녀가 부모 간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에도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17). 각종 통계 자료로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은 TV와 뉴스, 또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하에, 각종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수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여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06년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정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 (2020년 6월), ‘앞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

1) 2019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중앙입양원으로 분산되었던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자료 및 업무수행에 대한 인용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22403>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 고 밝힘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 될 것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대해, 2020.06.09). 지난 2018년 11월의 경우, 정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 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그 밖에도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지원매뉴얼이나 (경찰청,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과 같은 관련 현장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령 재개정 및 각종 정책방안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쟁점으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들 수 있다 (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 이현, 20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을 비롯하여 관계가 끝난 후에도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행동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구타 또는 학대’, ‘일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 행위’ 를 포함한 부부 폭력의 의미로 주로 사용해 왔으며 부부간 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행위를 구분 지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가정폭력이 행해졌을 경우에 아동학대로 정의 내림으로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승경, 송미경 & 김미경, 2014).

배우자 폭력과 자녀 학대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높고 (신나래, 2019; Appel & Holden, 1998; McGuigan & Pratt, 2001),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한다 (Stover, Ippen, Liang, Briggs & Berkowitz, 2017; van Rosmanlen-Noijens, Lahajie, Lo Fo Wong, Prins & Lagro-Janssen, 2017; 김주영 & 장현석, 2016; 이승주 & 정병수, 2015).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나 방임을 비롯하여 부모간 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간 폭력행위 후 피해 부모의 상처나 집안의 부서진 물건 등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를 가정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피해 경험을 포함하여 부모간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함으로써 경험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정서적 폭력 피해’ 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Emery, 2011; Graham-Bermann & Huhges, 2003; Jouriles, McDonald, Slep, Heyman & Garrido, 2008; 최혜정, 2012). 특히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폭력 피해자와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Emery, 2011; van Rosmanlen-Nooijsens, et. al., 2017; 이진희, 2015). 또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정서적 위축, 학습된 무력감, 우울증 등을 나타내거나 (최진영 & 김기현, 2019) 학대자인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보다 힘이 약한 다른 아동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충권 & 양혜린, 2017). 특히 이러한 공격성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만으로도 영향을 받아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김주영 & 장현석, 2016; 이승주 & 정병수, 2015).

특히, 부모의 학대행위는 청소년 가출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2019), 연령별 가정폭력 피해 비율에서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의 피해가 전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저연령에 비해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 가출문제와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중학생 (3.4%)의 가출 경험이 타 연령대에 비해 (고등학생 3.1%, 초등학생 1.3%) 가장 높았고 (통계청, 2019),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9), 청소년 가출은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생존형 가출’ (40.11%)과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는 ‘방임형 가출’ (20.9%)이 가장 많았다. 귀가 거부 사유도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돼서’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가 가장 높았다. 즉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 중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가정을 떠나게 된 ‘가정밖 청소년’인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탈가정을 결심한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과 생계의 불안, 고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허윤희, 2019.11.04). 가출청소년 대다수가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가출을 하게 돼 이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할 사회보호체계가 더욱 필요하다.

결국,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당사자는 자녀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키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 가정폭력과 학대를 막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원인이 존재하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는 다른 폭력보다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향후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위협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은 단순히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주로 부모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족구성원 모두를 개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인 청소년을 개입의 중심에 두되, 위기 상황에 관련된 인물들 모두를 개입 대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하여, 교사, 경찰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기존에 개발된 가정폭력 위기개입 매뉴얼은 가정폭력 피해 및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특정하여 개발되지 않았으며, 주로 성인여성 피해자와 성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경찰청, 20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에서 개발한 위기개입 매뉴얼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화 되어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다루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입에서부터 연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위기개입 전반에 대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안전망의 청소년상담복지 핵심기관으로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복지서비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CYS-Net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유관기관에서 의뢰 받은 사례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호소하는 경우가 747명이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요청으로 외부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내담자에게 각종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5,336건 이었다. 이외에도 2019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및 가정에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각종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전체 168,377명 중 11,51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의 핵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접수 경로를 통해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응체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유입되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 중에는 대인관계, 진로 등 다른 문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상담자와 신뢰가 형성된 후에야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거나, 가정폭력에 따른 육체적 피해 외에도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정서적 문제,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곤란, 경제적 어려움, 법적 다툼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권리보장원,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법적, 의료적, 심리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식 및 정보들을 상담자가 충분히 갖추었을 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이 다양한 접수 경로를 통해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응체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실무자를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입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및 효과에 관한 자료와 현행 지원 체계들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위기개입의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특별히 서비스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현장 실무자 및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개입의 구성요소, 문제점, 효과적인 개입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 세부적인 개입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과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한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다각적인 현장맞춤형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의 확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부부 폭력뿐 아니라 자녀 학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와 17조에 의하면 자녀의 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호에 의한 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저해하는 심리적, 육체적 폭력의 가혹 행위를 포괄한다 (김연주, 2017).

가정폭력의 유형은 아내학대/남편학대, 노인학대, 자녀학대, 기타 앞에서 열거한 관계자들 외의 기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는 도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기존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Winstock, 2007).

가족은 심리적, 법적, 경제적,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 모두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폭력이 발생 될 수 있고 그 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 (문성원, 2020; Winstock, 2007). 가정폭력의 유형 중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유형의 유형별 구체적 행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정폭력에서의 자녀학대 유형

유형	내용	구체적 행위
신체적 폭력	가족 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밟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유형	내용	구체적 행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반드시 상처자국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림,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음, 물에 빠뜨림, 협박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가구를 부수는 행위,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행위
언어/정서적 폭력	<p>가족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p> <p>가장 흔한 폭력의 종류이며, 주로 신체적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치유하는 시간이 더 길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 및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이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폭력	<p>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관찰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드라이성교 등)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p>방임은 보호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협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p>	<p>물리적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및 청소년을 방치하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유형	내용	구체적 행위
방임·유기	기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집을 나가라고 해놓고 집을 나간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고 가출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 아동 및 청소년이 집에 못 들어오게 집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꾸는 경우
경제적 폭력	가족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용돈을 주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학대의 흔한 형태로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의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소유물을 파괴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출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유형을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

특별히 가정폭력의 유형 중 경제적 폭력/학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가정폭력의 아주 흔한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도구삼아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문성원, 2020),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가해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특히 보호자와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폭력에서 청소년은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주요 수입을 버는 학대행위자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파괴하겠다는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통제를 위한 경제적 폭력은 우리나라 가정폭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온 폭력 유형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로 신체적 폭력과는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rphy & Carscardi, 1993). 그러나 아직까

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 경제적 폭력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 및 경험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유형 외에도 폭력/학대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가족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곁을 못 떠나게 하는 정신적 학대의 또 다른 형태인 ‘고립’ 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이용하여 폭력을 지속·정당화하거나, 사회가 부여하는 특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 가족구성원을 통제하는 가정폭력 유형이 있다 (천정환, 2010; Winstock,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유형으로 신체적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학대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림을 강조한다 (Street & Arias, 2001).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의 문화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개념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해 버림에 따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은폐되고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와 심각성이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운희, 2006).

나. 현황

부모에 의한 폭력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행동의 범주 또한 매우 넓어지고 있다 (허인영, 2017). 아동권리보장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학대 발생가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의 중복 발생은 15.1%로 나타났으며 (이상균, 장화정, 김수린, 김경희 & 김미경, 2017),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6.4%로 나타났다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 조운주, 2017). 국외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의 중복률이 최소 35%로 나타났으며 (Jouriles et al., 2008), 아동·청소년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발생률이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Appel & Holden, 1998; McGuigan & Pratt, 2001). 이처럼 아동·청소년 학대와 가정폭력은 중복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가 90.8%로 가장 많았고, ‘육체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였다’가 30.3%, ‘피해자의 물건을 부숴다’는 2.1%였다. 지난 1년간 여성이 배우자에게 가한 폭력도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가 80%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물건을 부숴다’는 1.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는 0.9%로 나타났다.

표 2. 아동학대사례 유형

유형		비율(%)
	신체 학대	13.96
	정서 학대	23.82
	성 학대	3.69
	방임	10.58
중복 학대	신체 학대·정서 학대	38.10
	신체 학대·성 학대	0.25
	신체 학대·방임	1.03
	신체 학대·정서 학대·성 학대	0.80
	신체 학대·정서 학대·방임	2.77
	신체 학대·성 학대·방임	0.00
	신체 학대·정서 학대·성 학대·방임	0.04
	정서 학대·성 학대	1.71
	정서 학대·방임	3.16
	정서 학대·성 학대·방임	0.01
	성 학대· 방임	0.01
	소계	47.92 (11,792건)
계	100.0 (24,604건)	

<출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권리보장원 재구성>

※ 아동·청소년 학대관련 통계는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및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하였음을 밝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2017)에 따르면, 가정내 학대 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6.9%인 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한 경우는 13.1%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막대기, 허리띠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 경우는 26.6%,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른 경우는 14.9%, 그릇이나 의자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는 12.1%로 보고되었다. 가정내 학대로 인하여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는 4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36.0%,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특성

가.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엄격한 가부장제 속에서 성장하고,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고, 잘못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면서, 폭력 행동에 대해 분노감을 가지면서도 폭력을 문제해결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양가적 태도를 내재화 하였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기숙 & 이금옥, 2010).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음주, 자녀 문제,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경직된 의사소통과 분노 표현, 스트레스,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 등이 상호작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별히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지지와 안정을 찾기 어렵다. 부모간 폭력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를 받아줄 여력이 없어 아동의 정서조절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또한 어머니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모델링한다 (Katz et al., 2016). 즉, 부모간 폭력 노출 경험을 한 청소년은 건강한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인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모델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상습적인 폭력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나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폭력도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항도 개선의지도 상실하게 되는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한다 (최혜정, 2012; 류은주, 2019). 이로 인해 모는 대처능력 감소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만성적인 소진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와 적절한 양육 및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연구는 지적한다 (류은주, 2019). 이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서 당사자의 신고나 외부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사회적인 기관들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014)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부모간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으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변 성인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겨 별다른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학교나 전문기관 담당자가 상담이나 출동의 조치를 취해 주긴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모 폭력 가해 경험이 높다.
- 중복 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이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 허용도가 높다.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 이후 가해자인 부모에게는 미움과 불쌍함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부모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 심리적 상처와 분노, 죄책감과 같은 양가감정을 경험한다.
- 가정폭력 발생 후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자책과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
- 폭력 경험 후 시설입소과정에서는 대체로 피해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부모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폭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피해 부모의 의견을 따르고 피해 부모를 위해 생활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나. 가정폭력의 징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동·청소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징후를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 (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는 각 가정폭력(학대)의 유형별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보일 수 있는 징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상담사 또는 교사들이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잘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피해 청소년의 행동적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여 초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체적 학대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적 징후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영똥한 변명을 하는 경우,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행동적 징후로는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이나 품행을 보이는 경우,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수업 중 조는 태도, 비행, 절도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성적 행동 징후와 비성적 행동 징후로 구분할 수 있다. 성적 행동징후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비성적 행동징후로는 수면장애, 자기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등이 있다.

표 3. 가정폭력의 징후

구분	내용
신체적 학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정서적 학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 (놀이 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 (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방임행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구분	내용
성적 학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 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퇴행 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 (자살시도) -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섭식장애 (폭식증/거식증) 수면 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다.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권리보장원 (2017)에서 실시한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특성에서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 33,436명 중 21.4%에 해당하는 7,15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이 6,466건 (19.3%), 발달·신체 건강이 1,863건 (5.6%), 장애가 711건 (2.1%)이었다. 항목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1,121건 (3.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833건 (2.5%), 학교부적응이 722건 (2.2%), 약물·흡연·음주가 669건 (2.0%)으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557건 (4.7%)으로 가장 높았고, 주의산만이 1,034건 (3.1%), 과잉행동이 645건 (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 피해로 적지 않은 청소년이 우울함 (22.9%)과 부정적 자존감 (23.6%)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립감은 17.5%, 두려움은 16.3%로 나타났다. 학령별에 따라서 초등학교생의 경우 우울함을 보고한 비율이 12.0%로 다른 후유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교생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 피해로 인한 행동 문제와 관련해서 가출은 5.6%, 무단결석은 4.2%로 나타났다.

특별히 가정폭력 피해와 청소년의 가출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실태조사에 따르면 쉼터 유형별 가출 원인으로 폭력, 학대 등으로 가출을 하는 생존형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임형의 경우가 20.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귀가 거부 사유로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 봐 걱정되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등 가족 간의 문제로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일시 고정 쉼터는 70.1%, 단기 쉼터가 63.3%, 중장기 쉼터가 65.3%로 나타났다. 이처럼 쉼터에 입소하는 가출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경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폭력 또는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은 높은 공격성과 폭력 행동, 비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문제행동, 학교부적응과 학업 저하,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성문제와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있다 (김수정 & 정익중, 2013; 김은경 & 이정숙, 2009; 박은주 & 최말옥, 2014; 백종림 & 정익중, 2013).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장희숙, 2003)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Eisenberg, Cummings, Armeli & Lynch, 1997). 이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자신을 평가절하 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보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Briere & Runtz, 1993; Kolko, 1992).

가정폭력은 한 개인에게 미치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가 지니는 스트레스는 전쟁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위협과 공포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Sudermann & Jaffe, 1997).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 외에 폭력을 목격한 간접 피해자도 심리적 외상을 (트라우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인, 2008).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서 나타나는 폭력 공포의 재경험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갈등이 표출되어 폭력의 당사자 간과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신선인, 2008).

3. 국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법적 안전망

1990년대 후반에 가정내 폭력, 부모의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사례²⁾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변미희, 이무영, 2003).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1)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 2)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4)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었다. 2012년에는 아동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는 등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³⁾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19). 그 결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아동학대사건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후에도 관련 주요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는 1) 보호조치, 2)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3) 아동의 후견인 선임,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예방교육의 실시, 6)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자 국가와 개인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1) 신고, 2) 고소에 대한 특례, 3) 현장출동, 4) 응급조치, 긴급입시 조치 및 입시조치, 5) 보호처분, 6) 보호 명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청소년을 위한 응급조치, 입시조치, 보호 명령 등의 다양한 보호 규정 외에도 학대 행위자 대상의 보호처분 등과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시설의 종사자 등의 의무와 권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개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공적 영역의 권

2) 1998년에는 친부와 계모의 구타 및 학대로 여아는 사망하여 암매장되고 양상한 모습의 5세 남아가 발견되었으며 1999년에는 부모의 잘못된 종교적 믿음으로 병원치료를 거부당한 채로 방치된 9세 여아가 발견되었다(변미희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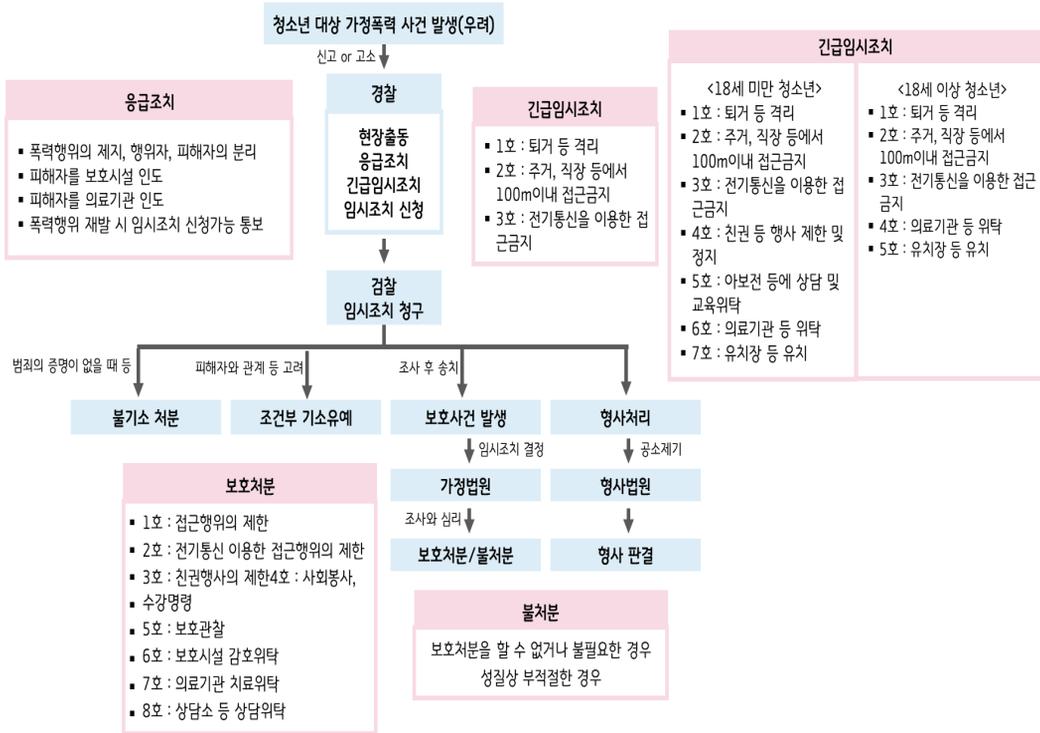
3) 울산에서 8세 여아가 계모의 폭행으로 사망했고, 칠곡에서는 계모가 8세 여아를 폭행하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후 12세인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아동권리보장원, 2019)

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례 관련 조치 내용을 법원, 지자체, 경찰 등이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권력이 아동학대 사례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1) 신고(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상담소의 설치·운영), 2)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3) 취학 지원, 보호, 치료 보호(아동의 취학 지원,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등,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 비용 지원, 치료 보호) 등의 장치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신고나 상담을 위한 절차와 경찰의 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나 치료 보호, 취학 지원 등의 제도도 구비되어 있어 가정폭력 징후가 청소년에게 보일 시 바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한다.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키는 장치로는 1)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와 고소의 특례, 2) 판사의 피해자보호명령, 3)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의 처리, 4) 부양비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다양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가 발견된다면 즉시 신고는 물론, 적극적으로 법조항에 확인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사건 발생(우려)시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도이다.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든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인지 18세 이상 청소년인지 대상의 연령에 따라 긴급입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찰에 입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 발생, 형사처리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 가능

그림 1.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사건 발생 (우려) 시 법적 절차

이렇듯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피해 청소년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법령이 재개정되어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여 왔다. 아동·청소년 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고명수, 2014), 공권력 및 행정력을 갖춘 경찰과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즉각적으로 개입·대응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관계부처에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청소년은 관련법의 연령 제한에 따라, 주 사례관리기관이 어느 곳인

지에 따라, 생활공간의 위치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원 관련 기관들이 보호·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곳들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로 가정밖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인 경우,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주보호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매우 다르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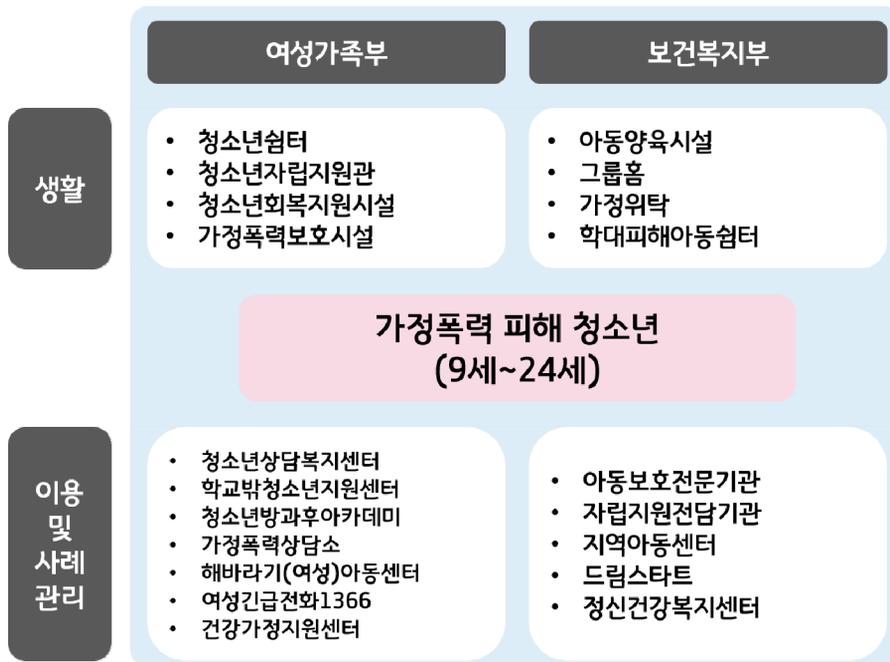


그림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데 18세 미만이 주요 기준이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생부터 보호,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9~24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위기청소년 중 가정밖 청소년(가출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중심이다. 관련기관 또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관리 중점의 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기구인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의 일부 개정안(2020년 6월)이 공포되면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1) 청소년안전망

가정폭력 피해와 같은 위기청소년 개입을 위한 범정부적 통합지원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안전망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내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조직과의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기관별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이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연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을 예방 및 발견하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 전반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관과 지역자치단체가 공동 혹은 개별 관리·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전문기관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에 따라 위기 청소년 또는 위기가족·가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 부모,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제공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화미, 2017).

2)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복지의 중추기관이자 청소년안전망의 핵심 기관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⁴). 전화상담,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유입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해바라기센터로 해당 사실을 신고한다. 특히 광역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보호소는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

4)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매칭 사업으로 운영된다.

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귀가조치,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보호시설 연계 등의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관기관을 통해 연계 받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인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교육 등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가정 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호 기간에 따라 일시쉼터(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단기쉼터(3개월 이내), 중장기쉼터(3년 이내)로 분류되며 가출예방,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 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비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사회 내의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2020).

구분	상세내용	개입
연계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확인 후 센터로 연계	공공기관(드림스타트, 경찰서 등) 또는 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직접 확인	청소년전화 1388/ 개인상담 접수 등 센터와 초기 접촉 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안에 따라) 신고
	센터에서 다른 주요소문제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 추가 확인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으로 연계

그림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유입되는 경로

그 외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이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설치된 보호체계이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신고와 이와 관련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을 임시로 보호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대 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 학대예방사업의 핵심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를 판단하고 난 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의 지역 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 및 가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소영, 김세원, 정해린, 2019; 아동권리보장원 2019).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아동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0).

위기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호조치아동의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 시설이 있다.

4) 교육부

Wee프로젝트는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이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도 Wee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의 단계별 Wee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단위 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는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미디어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를 조기발견 하여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Wee센터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며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에게 전문가의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된 Wee스쿨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하거나 학교·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등에게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Wee, 2020).

5)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과 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4월에 학대예방경찰관 (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발족했다.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의 가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예방경찰관이 동행출동을 하여 조사,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주거지 퇴거·통신 접근금지 등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재발 우려 가정 정기적 모니터링, 유관부처 협업, 통합 솔루션팀 운영 등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 2020).

4. 국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미국은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20세기 초반 연방 아동국 (Federal Children's Bureau)이 창설되고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이후 민간기관 중심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아동보호체제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 의료 기기의 발달과 197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정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신고 증가로 아동보호체계가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1980년대 초반 부모-아동 간 애착 연구 등을 토대로 가족 강화와 가족 강점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아동보호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아동보호체

계의 대안으로써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안이 ‘차등적 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이다. 2010년의 아동학대 및 예방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P.L.111-320)은 차등적 대응체계 확대의 동력이 되었다. 동법에 따라 법적·정책적으로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별로 차등적 대응 방식이 반영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서비스 수혜 가정의 수를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이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차등적 대응체계’에서는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는다.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거나 당장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사례의 경우 ① 조사 트랙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절차를 적용하고, 저·중위험의 심각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② 비조사 트랙의 대안적 방식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주연, 2016). 위험도에 따라 ‘원가족을 보존’ 하면서도 ‘아동의 보호’ 를 위해 피해 청소년과 폭력 행위자 간의 분리 외에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친인척의 학대로 사망한 이주 아동의 사례를 2년여 간 추적하여 발표한 조사 보고서⁵⁾를 통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아동은 사망 이전 수차례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어 보호 기회에 노출되었으나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경찰 등 그 어떠한 공공기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도적인 위기개입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했다. Victoria Climbié Inquiry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보호정책을 포함하여 전향적인 아동 정책의 추진의지를 담아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라는 정부 녹색 (green paper)을 발표하였다. 녹색서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아동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비전을 설정,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을 아동학대 및 각종 발달 위기에 노출되어 고통 받는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아동보호정책 개편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의 실천적 노력은 2004년 아동법 (Children’s Act) 개정, 2013년 ‘아동보호업무 지침 개정안’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업무 지침 개정안’ 은 사회 전체가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주체임을 알리고 아동 및 가족과 접하는 유관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업무지침에서는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초기 사정과 정보공유, 보호조치의 일정 수립 및 개별 사례 관리 과정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박세경, 2015).

일본에서는 1933년 처음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

5)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주한 Victori Climbie는 이모할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의 학대로 2000년 2월 25일 사망했다. (The Victoria Climbie Inquiry, L. Laming, 2003,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

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지속해왔다.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던 당시 전쟁고아 등이 폭증하고 절대적 빈곤과 유교적 가부장제도에 기인한 아동의 사물화(私物化)에 따라 아동들이 고통을 받았다. 1973년 ‘아동학대, 유기, 살해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1983년, 1988년, 1996년에 아동학대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국제조약에 아동학대와 유기 및 방임을 명기한 1989년 UN총회의 ‘아동권리협약’⁶⁾은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조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배상균, 2015). 이에 따라 1996년에 8개 주요지역에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관 연계를 추진하였고, ‘아동학대방지 안내’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를 장려하였다. 1998년 아동상담소의 야간·휴일대응체제 구축 및 아동학대 관련 홍보의 활성화로 아동학대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000년 발의·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예방-조기 발견-조기 대응을 통한 보호 지원과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 아동권리 옹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방지 정책은 전후(the postwar era) 절대적 빈곤, 가부장적 제도·문화 등으로 사물화 되었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배상균, 201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가정폭력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굴, 2) 국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 연결되는 가정폭력 발굴·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3)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초점을 맞춘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UN아동권리협약 제 19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모형 개발을 위해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우선 국내외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2020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다.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에 따라 매뉴얼 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그림 4>와 같다.

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가정폭력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및 실무자의 적절한 대응 미비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조웅형, 박종민, 김태언, & 이규열, 2020. 10. 17).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사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학대 신고의무를 지닌 현장의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들이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가정폭력 피해 사례 발생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서비스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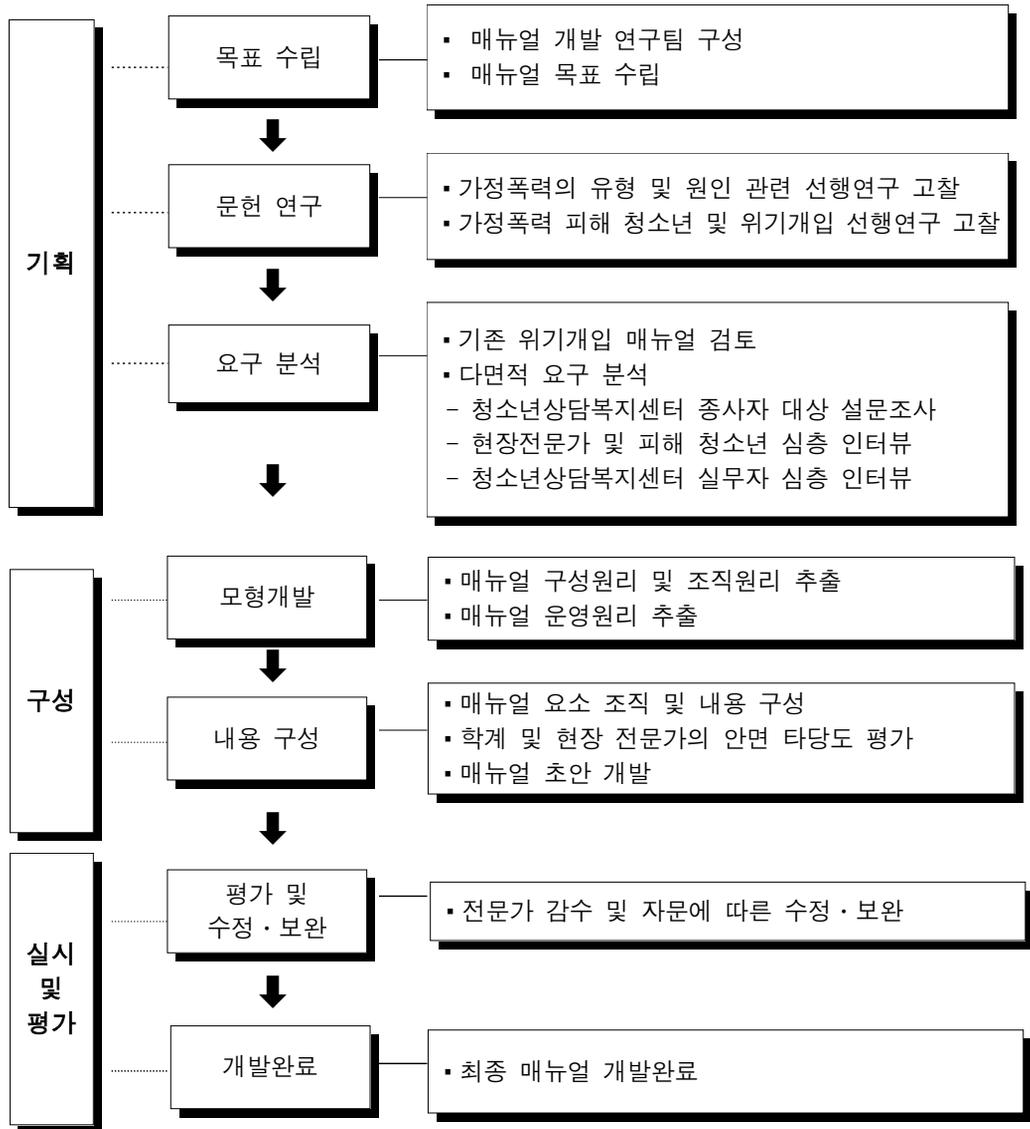


그림 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절차

공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본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은 9세에서 24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 폭력 피해에 초점을 두었다.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

정폭력 관련 정보 수집, 신고,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절차를 안내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 원리 및 구성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기존 가정폭력 대응 관련 매뉴얼 및 안내서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전문개입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위기개입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매뉴얼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사례 발견 및 접수, 사례 판단 등 개입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기존의 사항들을 재구조화 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욕구와 협력체계를 고려함으로써, 매뉴얼의 통합성-체계성-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기존 가정폭력 대응 관련 매뉴얼 및 안내서 검토

2013년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이후 가정폭력 긴급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초기 지원 매뉴얼」(2013)과 2017년 제작된 응급의료기관, 법원, 검찰 등과 같은 지원기관 대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매뉴얼」,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요령」,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위기개입 매뉴얼」 등이 있다.

위의 매뉴얼에는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규정 소개, 사전 예방 절차 소개, 사후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고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에 대응 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뉴얼에서 가정폭력 피해 및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특정하여 개발되지 않

았으며, 성인 여성 피해자와 성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주로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대상의 매뉴얼은 신고와 조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은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다루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중심의 위기개입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 가정폭력 위기개입 매뉴얼들이 담고 있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기존 가정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안내서

제목	발간처	발간 년도	내용 구성	가정폭력정의	특징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 상담과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 관련기관, 상담 및 지원 서식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013년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적극적인 여성 긴급전화1366의 역할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법률, 행정기관 등의 효율적인 연계방법들을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경찰청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심리 - 신고접수 유의사항 - 현장출동 유의사항 - 수사단계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피해자의 유형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

제목	발간처	발간 년도	내용 구성	가정폭력정의	특징
					죄 피해를 구분하여 보호지원, 유의사항,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응급의료 기관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한국 여성 인권진 흥원	2017년	- 가정폭력 이해하기 - 가정폭력 주의깊게 보 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서 의도적으로 물리 적인 힘을 사용해 신체적, 정신적 피 해를 주는 행위 가족구성원 간 힘 의 균형이 깨진 상 태에서 일어나며 서로 존중하고 동 등한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심 각한 범죄행위	응급의료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사례 를 제시하여 협력기 관의 역할을 제시하 고 있음.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 여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법원/ 검찰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한국 여성 인권진 흥원	2017년	- 가정폭력 바로보기 - 가정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실천 가이드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 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학대행위	법원, 검찰 종사자 를 대상으로 가정폭 력 피해자를 지원하 는데 필요한 정보와 사례를 소개. 배우 자에 의한 폭력피해 여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
위기개입 매뉴얼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018년	- 가정폭력의 정의 및 원인 - 가정폭력의 유형 및 특징 - 가정폭력 위기개입상담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 족구성원에게 손상 또는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심리정서 적, 경제적, 언어 적, 성적학대행위 를 하는 것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상담사의 가정폭 력 피해 청소년 위 기 개입을 위해 제 작된 매뉴얼. 가정폭력관련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간 략한 설명과 청소년 의 위기개입상담 과 정에 대한 정보가 주 내용임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 복지부	2018년	- 아동보호서비스의 기 본 원칙 -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 대상자 발굴·접수 및	아동학대란 보호자 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민간 담당, 기타 아

제목	발간처	발간 년도	내용 구성	가정폭력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서비스 연계·지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p>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p>	<p>동복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p> <p>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 계획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주요 내용임</p>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보호전문기관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세부 업무수행 절차 - 아동학대 업무수행 세부지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센터 심리치료사업 	<p>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아동학대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한정</p>	<p>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 아동 안전이행확인 및 사건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담고 있음</p> <p>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업무수행 단계에 맞는 사례, 질문, 예시, Tip, Q&A 로 구성되어 있음</p>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p>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p>	<p>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와 함께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및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p>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도 조사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고자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 까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 졌으며 총 3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상담사는 대부분이 여성 (80.1%) 이었고, 30대가 36.5%로 가장 높았다. 약 35%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 하였고 응답자의 68.7%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급은 팀원이 45.6%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동반자가 18.4%, 팀장이 17.5%, 시간제동반자 10.2%, 센터장이 5.3%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5.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여성	80.1%
	남성	19.9%
연령	20대	16.4%
	30대	36.5%
	40대	31.0%
	50대	14.9%
	60대이상	1.2%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3.4%
	강원권	3.5%
	충청권	17.3%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19.3%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4.5%
	제주권	2.0%

구분		빈도
근무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3%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8.7%
직급	팀원	45.6%
	팀장	17.5%
	시간제동반자	10.2%
	전일제동반자	18.4%
	센터장	5.3%
	기타 (미디어전담상담사, 학교폭력원스톱상담원 등)	2.9%
상담 경력	1년미만	10.5%
	1년이상 ~ 2년미만	11.4%
	2년이상 ~ 3년미만	9.6%
	3년이상 ~ 4년미만	14.6%
	4년이상 ~ 5년미만	10.2%
	5년이상	43.6%
가정폭력 피해 개입 경험	예	54.4%
	아니오	45.6%

나. 요구도 조사 결과

본 요구 조사 문항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센터 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현황과 매뉴얼 관련 요구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과 응답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 참여자의 41% (98명)가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위기개입 매뉴얼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보급한 매뉴얼에 대한 응답이 31명 (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매뉴얼이 각각 18명 (20.0%)이었고, 그 외에 해바라기센터, 성가족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이 8명 (8.9%),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부처에서 보급한 매뉴얼이 3명 (3.3%), 출처를 모르겠다가 12명 (13.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센터 내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응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21.3%는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23.6%는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98.2%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센터 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대한 질문

구분		빈도
센터 내 매뉴얼 유무	있다.	41.0%
	없다.	59.0%
매뉴얼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4.4%
	아동보호전문기관	2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
	가정폭력 서비스 지원 기관 (해바라기센터, 성가족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8.9%
	기타(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3%
	출처를 모름	13.3%
매뉴얼의 실효성	미흡하다.	23.6%
	보통이다.	55.1%
	우수하다.	21.3%
매뉴얼의 필요성	필요하다.	98.2%
	필요하지 않다.	1.8%

표 7.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 출처에 따른 장점과 단점

	매뉴얼 출처	장점	단점
1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의 전반적인 체계와 흐름을 알 수 있다. - 단계별로 필요한 개입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실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다. - 가정폭력 및 피해 청소년에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다양한 변수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대처방안 및 구체적인 지침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다. -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대처 방법 등

	매뉴얼 출처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다. - 상담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미흡하다. - 연계 이외에 상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이 미흡하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이며 단계가 나뉘져 있다. -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 및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다. - 매뉴얼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 청소년에게 1차적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거하여 현황을 판단하고 사례를 다루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례를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 신고가 우선적이고 신고 후의 대처 방안이나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 신고 및 연계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 체계, 업무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 - 부모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체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행동지침 지시가 있어 상담자가 혼란스럽지 않다. - 사례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 법적 절차,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과정을 파악하고 진행하기 용이하다. - 위기개입 시 상담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상황에서 상담자가 어느 지점까지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다양한 변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 가해 부모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 서비스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성가족상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개입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하기 어렵다. -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	기타(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에 잘 맞춰져 있다. -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신고의무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 지역사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다보니 상담적 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내용이 장황하여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다양한 상황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 위기종료 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소속 기관에 비치된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하였고 총 73명이 응답하였다. 매뉴얼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표 7>에 정리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며’, ‘매뉴얼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 개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를 장점으로 보고하였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매뉴얼은 ‘단계별로 필요한 개입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상담자 안전 지침이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조항⁷⁾에 따라 감정노동으로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일련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토대로 피해 청소년에게 1차적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절차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원활하게 사례 연계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 제작했거나 소속 광역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작한 매뉴얼은 ‘명확한 행동지침 지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센터의 실제 상황과 과거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한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매뉴얼의 공통된 단점으로 ‘다양한 변수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대처방안 및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고’, 신고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신고 후의 대처 방안이나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가해) 부모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등이 있다. 매뉴얼 별로 단점을 확인 하자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매뉴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상담자의 의무와 역할의 한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매뉴얼은 법령에 의거하여 사례 및 상황을 이해하다보니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무부, 교육부 등 기타 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의 경우에는 ‘교육자, 지역사회 관리자 등 비상담자 대상의 매뉴얼이어서 청소년상담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크게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법과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상담자 윤리 및 상담자 보호,

7)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가해 부모에 대한 개입방법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피해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정보와 상담사를 포함하여 피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시스템 내 전문가의 역할 및 개입방법이 보고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사례를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의 판단 기준 및 유형별 개입방법과 법률정보 및 상담 방식, 가정폭력 신고 전 고려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신고절차 및 신고 기관에 대한 정보, 가정폭력 유형별 지원 서비스 및 연계 방법을 보고하였다. 상담자의 윤리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고의무자로서 내담자와의 이중 관계, 가해 부모로부터 상담자의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해 부모에 대한 개입방법으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시 가해 부모에 대한 대응방법,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 개입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고 이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지원 및 보호 등 개입방법, 재발 방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었다.

다. 소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이 있다는 응답이 59%였으며 매뉴얼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23.6%였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극 개입하려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허인영, 2017). 그러나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사후 심리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의 매뉴얼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 개입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상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현장에서 피해 청소년 발견 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요한 응답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위치 및 입장을 반영하고, 초기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개입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 위주의 안내보다는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신고 이후

의 상담자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전반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체계’, ‘피해 청소년 특히 신고나 개입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응방안’ 과 ‘상담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역할 및 개입방법’ 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 상담자이자 신고의무자로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상담자 보호 및 상담자 윤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폭력피해 청소년의 가족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입방법’ 과, ‘신고 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개입방법’ 을 안내 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양하고 변수가 많은 가정폭력 발생 상황 (이상균 et al., 2017; 이인선 et al., 2017), 상담자와 내담자, 보호자이자 가해자인 부모-청소년의 관계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의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돕는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사후 관리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상담사들이 타 연계기관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법 등 구체적인 개입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심층 인터뷰

가. 심층 인터뷰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사후지원 전문기관 종사자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에 관여하는 전문가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가정폭력으로 가출 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위기개입 전문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청소년 쉼터 실무자, 여성의 전화 전문가,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실무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경험,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의견 등이다. 전문가별로는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 청소년 개입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

을 수렴하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세부적인 개입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위기개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 청소년의 유입 경로, 연계 프로세스,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등이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고, 소속 기관 및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특성화된 질문을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되 포화 상태에 이른 내용들을 구조화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터뷰 분석은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 MAXQDA20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범주화 하고 핵심 의미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와 <표 9>에, 인터뷰 대상자별 조사내용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8.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번호	기관 유형	성별	연령	비고
1	OO여자중장기쉼터	여	19세	
2	OO여자중장기쉼터	여	19세	
3	OO여자중장기쉼터	여	20세	
4	OO남자단기청소년쉼터	남	17세	

표 9.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위기개입 전문가)

번호	소속기관	성별	직급	근무지역	근무경력	비고
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	팀장	경남	10년이상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	팀장	대구	5년	
3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	팀장	전북	12년	
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	팀장	부산	15년 미만	
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	소장	부산	20년	청소년쉼터경력포함
6	청소년쉼터	남	팀장	부산	10년미만	
7	아동보호전문기관	여	상담원	부산	5년미만	

번호	소속기관	성별	직급	근무지역	근무경력	비고
8	아동보호전문기관	여	팀장	경기도	10년미만	
9	여성의 전화	여	소장	부산	26년	가정/성폭력상담소경력
10	사단법인	남	대표 변호사	서울		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아동권리보장원) 상근변호사
11	국제아동 인권센터	여	변호사	서울		
12	법률사무소	여	대표 변호사	서울		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아동권리보장원) 상근변호사
13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여	경찰	서울		
14	지방경찰청	남	경위	경기		

표 10. 심층 인터뷰 대상자별 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유형 - 가정폭력 피해 후 대처 - 가정폭력 피해 후 주변의 도움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유형 - 피해 청소년의 유입 경로 - 센터 내 개입 프로세스 - 피해 청소년이 희망하는 서비스 - 외부기관 연계 프로세스 - 사후관리 - 가정폭력 피해 신고(연계)의 어려움 및 지원사항 - 효과적인 개입, 연계 방법에 대한 의견 -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유형 - 피해 청소년의 유입 경로 - 피해 청소년의 호소 문제 및 희망 서비스 - 가해 부모에 대한 개입 및 법률지원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업(연계)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장점 및 사후관리에 협업 정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어려움 및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사항

조사대상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주요한 연계기관 - 보호자 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해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청소년 위기 개입 경험 및 법률적 개입과정 - 피해 청소년 위기 개입을 위한 법률지원 정보 - 연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과정 - 피해 청소년 사후관리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 청소년안전망 내에서 가용한 매뉴얼에 담을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
경찰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경험 - 신고접수 후 조사/개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및 조치 과정 - 연계기관과의 협업 -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역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에게 신고의무자로서 제안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해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청소년쉼터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유입 경로 - 가정폭력 피해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개입 방법 - 피해 청소년의 호소 문제 및 희망 서비스 - 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 방법 - 가해부모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 연계 기관 종류 및 연계를 통한 개입 과정 - 연계의 어려움 및 연계 기관에 바라는 점 - 연계 이후 사후관리 - 가정폭력 피해 신고 시 필요한 도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해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여성의전화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협조긴밀성 - 가정폭력사례 개입방법 - 공공기관(변호사, 경찰)과의 업무 연계 방법 - 피해 청소년사례관리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경험 - 효과적인 개입연구 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해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으로 가출 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한 내용은 크게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발생요인, 가정폭력 피해 후 대처, 폭력 피해 후 주변의 도움,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피해 청소년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요약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구분	범주	내용
가정폭력 피해 유형	신체적 폭력	-
	중복 폭력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가정폭력 발생요인	가정환경 요인	부의 감정조절 능력 부족
		부의 통제적 양육방식
		부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가정폭력 피해 후 대처	비행	생존형 가출
	신고기관에 도움요청	경찰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함
가정폭력 피해 후 주변의 도움	관심과 도움	주변 어른의 관심과 도움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도움
필요한 지원	안정감	가정 분리
	자립준비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1)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으며, 언어 및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이 함께 행해지는 중복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때리셨어요” (청소년A: 신체적 폭력)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따로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언어폭력이나 잦은 폭력이 있었어요. 클수록 더 때렸죠” (청소년B: 중복 폭력)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가정내 폭력은 다양한 수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지만, 크게 보호자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자 특성으로는 학대 행위자

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인터뷰에서도 폭력을 훈육의 수단으로 정당화 하면서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으로 가정폭력이 행해졌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 학대행위자의 자기조절 능력의 결여와 같은 성격 문제나 알코올 문제가 나타났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고 원래 분노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이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나쁘게 행동하는데..... 아빠가 집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저한테 푸는 게 한동안 너무 심해서....” (청소년C: 부의 감정조절 능력 부족)

“평소에도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아빠 연락이 많았고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왔어야 했고.” (청소년B: 부의 통제적 양육방식)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같이 화기애애하고 일상얘기 하다가.... 아버지가 과거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과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때리세요. 술을 열 번 마시면 여덟 번은 그래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 이후로 술을 거의 매일 마셔요” (청소년A: 부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3) 가정폭력 원인

가정폭력 피해 후 청소년들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형 가출을 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의 수단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청소년들은 지위비행이나 가출을 시도하는 악순환의 패턴이 나타났다.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자꾸 맞으니까.” (청소년A: 생존형 가출)

“너무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 없이 신고하면 경찰은 처음 신고하는 사람들은 주의하라고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모아 신고하려고 했어요. 증거 모으느라 오랫동안 폭력이 지속됐어요.” (청소년C: 경찰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함)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학원 마치고 집에 와야 할 시간에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아빠 연락이 와서 ‘어디냐?’ 고 묻는데 제 말투도 이상하고 하니까 ‘술 먹었냐?’ 물었어요. 평소에는 아빠 말에 복종했었는데 그때는 반항적으로 말을 하니까

저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술김에 화가 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청소년B: 통제적 양육방식이 비행으로 이어짐)

4) 가정폭력 피해 후 주변의 도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으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쉼터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 기관 즉, 경찰의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나타났다.

“집을 나와서 처음 이들은 혼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거나 지하상가에 있었어요. 3 일째 되는 날 지하상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시더니 ‘늦은 시간까지 왜 여기 혼자 있냐?’ 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우유 같은 거 사주시고, 신경 쓰고 챙겨주셔서 제 사정을 털어 냈더니 경찰에 가는 게 좋겠다고 신고해 주셔서 쉼터로 오게 되었어요.” (청소년D: 주변 어른의 관심과 도움)

“아빠한테 얼굴 쪽으로 많이 맞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이마가 많이 부어있다.’ 고 안타까워하면서 신고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을 모으고 학교 선생님이 신고해 주셔서 보호시설(쉼터)로 오게 되었어요.” (청소년C: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도움)

“신고를 했는데 집에 일단 가고 또 폭력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뻔히 때릴 거 알고 ‘다시 못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속상했지만 일단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전과 똑같이 화를 내시니까 또 신고를 하고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청소년B: 신고기관의 소극적 대응)

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고 쉼터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립의 필요성을 지각하였다. 즉, 자립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등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는 가정으로의 복귀나 가족관계 개선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재가출하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고 아빠 생각도 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내가 생활하는 반경 내에 없으니까요. 쉼터 선생님들도 도움 주시고 여기 동갑 친구나 동생하고 언니들이 있는데 속마음도 나누고 있어요. 전보다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쉼터가 보호 역할을 해주니까요” (청소년D: 쉼터 생활로 안정감 회복)

“자립 준비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나 취업 쪽으로 도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찾는 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쪽으로 도움 받고 싶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청소년A: 자립 준비를 하고 싶음)

“마음을 잡아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뭐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요. 자격증 공부든.. 뭐라도 일단 열심히 해서 잘 돼야..”

(청소년B: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김)

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전문가별 심층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한 내용을 크게 각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가정폭력 피해의 유형,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동반문제, 발굴경로 및 연계기관, 위기개입의 어려움, 연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안, 제공서비스 (청소년이 희망하는 서비스 포함)로 구분하였다. 전문가별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요약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전문가별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구분	범주	내용
가정폭력 피해 유형	부모로부터의 직접학대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중복학대
	부모간 폭력 목격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동반문제	폭력의 대물림	학대행위자에 대한 폭력 행위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비행	가출
		장기결석
	학교적응문제	학교폭력 피해자
왕따 경험		
정신병리적 문제	ADHD,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살사고	

구분	범주	내용
발견 경로 및 연계 기관	청소년 본인 신고	직접 경찰에 신고
	학교 (WeeClass,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면담
	지역내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자체 및 기타 신고의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연계)의 어려움	사례판정의 어려움	가정폭력,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의 어려움
	신고 및 조사과정의 어려움	신고 후 보복의 불안감, 부담감
		피해 청소년의 개입 거부 및 비협조
		비협조적인 보호자
		신고 절차의 어려움
	연계기관과의 협업의 어려움	폭력 현장의 변수(다양성, 복합성)
		가정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감수성, 민감성의 차이)
		연계기관 실무자의 잦은 인사변화(장기근속인력이 적음)로 소통의 어려움 및 비효율적인 업무교류
		개입을 위한 최신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비협조적인 연계기관
연계기관 협력	유관기관과 협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는 협의회 운영(소통)
제공서비스(청소년 이 희망하는 서비스 포함)	법적지원	안전확인 및 사례관리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감명령, 상담명령, 기소유예제도, 아동보호명령
	보호 및 생활지원	부모로부터 분리 및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진로지원 등) 쉼터, 일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 등 타 기관연계
	심리지원	청소년 본인의 심리지원
		부모와의 관계회복 지원
		심리지원을 위한 타기관 연계

구분	범주	내용
	가정으로 복귀	-
	보호자 지원	-
	사후관리	-
	보호자의(가해자)처벌	-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상담자 소진예방	-
	법적인 정보	-
	부모예방교육	-
	후기청소년 대상 내용	-
	아동학대 지식에 대한 내용	-

1)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피해 유형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부모폭력 목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폭력으로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와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끼어들게 하여 지나치게 자녀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과 지속적으로 부부간의 싸움을 자녀에게 노출시킴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 가정 중에 거의 부자 가정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는 이런 케이스..... 형제 두 명이 자꾸 문제행동을 해서 아버지는 훈육 차원에서 ‘잘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라. 맞아야 된다. 아니면 집에서 나갈래?’ 라고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맞는 것 보다는 나가는 게 나아서 일단 집을 나가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가지고 지금은 뭐든지 잘 못 하면 바로 아이들 스스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A: 정서적 폭력)

“아빠로 인해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딸한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든 거에 대해서 의지하는, 딸한테. 청소년인데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좀 대변인처럼 역할을 기대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니까 그에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이나 엄마는 왜 저렇게 무능력하게 이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냐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성의 전화 I: 정서적 폭력)

“엄마한테 뺨을 받은 적 있고 신고를 하고. 근데 엄마 문제가 자기가 때리는 것에 있어서 자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육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관 M: 신체적 폭력)

“부부싸움이 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 많이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을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는 정서학대로 보고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G: 부모폭력 목격)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동반문제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청소년의 경우 형제들 간의 폭력이나 존속폭행과 같이 폭력이 대물림 되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무기력함에 빠져 변화에 대한 요구나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방치된 피해 청소년의 경우 주변의 가까운 친척들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 청소년은 ADHD,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장기결석이나 대인기피, 가출문제, 학교폭력 피해나 왕따문제와 같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부모님들 간의 갈등들이 심해 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신고 많이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을 하셔가지고...(중략)...형제들 간의 폭력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많이 맞고, 당하고 살다가 이제 힘이 생기는 중학생 그 시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존속폭행, 부모님을 오히려 때리거나, 형제들을 서로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G: 폭력의 대물림)

“왜 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물림되고 폭력으로 인해서 부모한테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까같이 남양주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게임중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머니를 때리고 자기가 힘이 세지고 상대방을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리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찰관 M: 폭력의 대물림)

“그래서 아이들 특성은 좀 다양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 욕구가 크게 없어요.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별로 가지지를 않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은 안 변해요. 우리 아빠는 상담 받아도 안 변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G: 무기력)

“방입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주변의 지인들,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 학대로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는 건드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일차적으로 캐치했을 경우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나 왕따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 L: 학교폭력 피해 및 왕따)

“ 장기결석 아이들. 장기결석은 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출에 의한 아이들이 나이가 있으면 부모에 대한 학대 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한 번 장기 결석한 아이들은 가출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경찰관 N: 장기결석)

“ 보통 원가정 복귀... 가정 내에서 보호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사실.. 가정 내에서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가서 약간의 조금 ADHD나 뭐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사고 등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부적응이나 교우관계 어려움, 대인기피나 비행 등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H: 정신병리적 문제)

3) 발견경로 및 연계기관

발견 경로는 아웃리치, 학교 담임선생님, 경찰,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쉼터에 내방하게 되었고 상담 및 개입 과정에서 확인 되었을 때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나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변화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112를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가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오던 청소년이 학대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관의 특성상 공공 및 민간의 지역사회 다양한 상담복지 기관들과 연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개입과정에서 학교를 비롯하여 아동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피해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다양한 연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부한테 아동 학대를 당한다고 아이가 얘기 했는데, 모하고 부가 별거 상황이라서 모한테 물어보니까 모는 ‘전혀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아이가 계속 호소를 하니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B: 학교 담임 선생님과 면담)

“아이들은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 아동학대로,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요. 상담을 하다가 가정폭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상담하다가 가장 요즘에 힘든 부분이 라든지 그런.. 초기 면접을 통해서 상담사가 조금 더 깊게 파다 보니까 ‘아이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구나’ 라고 판별되는 경우가 많았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B: 상담과정에서 발견)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아동들 중에, 특히 청소년 중에 과거 어릴 때는 본인이 반항을 하거나 이런 힘이 없다가 나중에 좀 힘이 좀 생기게 되면, 본인이 이제 공부도 하다 보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H: 직접 도움 요청)

“우선은 폭력이나 억압이라는 것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수궁돼요. 근데 청소년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서 수궁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경찰 전문가 M: 직접 경찰에 신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얽여 있더라고요. 학대나 가정폭력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사회생활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분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

특별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청소년 보호에 적극 활용되어, 최초 신고 및 조사부터 아동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례관리 차원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 연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처음에 하려고 하면 청소년에게 일단은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지원해 주고 싶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는 곳’ 이라고 또 명시를 하고 나서 동의를 받으면, 그 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공문으로 의뢰서를 보내거든요. 의뢰서를 보낸 뒤에 그 쪽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저희한테 그 연계 결과 확인서를 다시 회신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H: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연계)

“학교 상담실에서 ‘이런 성추행, 성학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

4) 위기개입시 어려움

가정폭력 위기개입 시, 사례판정의 어려움, 신고 및 조사의 어려움, 피해 청소년 신고 거부,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가해 부모의 태도 등이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쉼터 종사자들은 대상자를 설득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하는 경우 사례 판정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쉼터에 내방하여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위기개입의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연계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저희가 신고를.. 경찰이 저희 쪽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보다 경찰이 가정폭력이라는 걸 알고 저희 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마다 경찰들이 판단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신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 맞냐, 안맞냐 이렇게 보내실 때 기준이 명확하지 못 하신 게 있어서..” (청소년 쉼터 F: 사례판정의 어려움)

“신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상담자가 지금 떨치는 거? 혹은 그 다음에 센터에 전화가 오거나 뭐 상황이 생겼을 때도 어... 이거 사실은 별 문제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상담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저희는 과정 상 이런 게 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 신고 부담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다시 연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소통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해야 되나, 표현이 정확하진 않는데 양쪽이 다 수고로우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힘드시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연계기관과의 소통 어려움)

“내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아예 신고를 하는데, 막상 아이는 그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그러면 이 아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긴 좀 솔직히 많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 24시간 이내 피해 대상자 설득)

“가정폭력이 맞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찌됐든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까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 (청소년 쉼터 F: 이후 거처에 대한 불안으로 신고 어려움)

“부모님을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신들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 ‘내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나’ 는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저항이 심해요.”

(경찰전문가 M: 가해 부모의 태도)

“저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늘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 기관 하고, 이 기관 하고 얘기가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막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OO지역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사례 중심으로 하시는 데가 틀림없이 계시고요, 신고를 바로 받아서 대응해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5) 연계기관 협력

연계기관과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에 따라 연계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결석이나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협력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계기관과 협력과정에서 양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입하였을 때 연계가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대 피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센터 이런 데는, 뭐 저희도 이제 상담원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상담은 하는데,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에 대해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고, 폭력성 이라든지 정서로 표현되는 친구들은 지역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운영비로 들어와 있고, 협약도 맺은 상태라서 저희가 조금 효과적으로 연계는 많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 쉼터 F: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아보전에 신고했을 때 잘 된 경우는... 아보전 관계자들. 피해 부모들, 부모는 가해 입장이고 아이는 피해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담스러워 하는. 왜냐면 신고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보전 사람들은. 내담자나 가정에서는, 그러면 신고나 가정폭력을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 쪽에서 하고, 저희가 상담적인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 부분을 저희가 하고. 그러면서 상호 교류했을 때 괜찮았던 거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러한 기관이랑 연계를 잘해야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려면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예비소집과 관련된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와 협업하고 있는 게 예비소집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을 합동 점검하고 있어요.” (경찰전문가 N: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경찰청에서 장기결석 아동을 확인할 때 지방청과 교육청,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까지 할지 이야기해야지. 근데 그 선이 없어요. 그 선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거죠.” (경찰전문가 M: 교육청 연계)

6) 제공서비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 대체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례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파악하는 것 또한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중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쉼터에서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연계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졌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희망하는 서비스로 가정으로 복귀, 경제적 지원, 생활지원, 심리상담 지원,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상담, 멘토링 지원 등이 있다. 연계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사후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분리보호절차 지원, 안전점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청의 경우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졌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거나 그 가정에서 잘 견디는 게, 아이들의 목적이 된 거 같아요.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조금 나아져서 조금 안정을 찾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혹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조금 치료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큰 거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 가정으로의 복귀)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문제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분들은.. 이제 그냥 상담을 통해서 조금 안정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을 조금 돌아볼 수 있게끔 부모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쉼터 F: 부모상담)

“멘토링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자격증 취득 이라든지, 진로상담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아이들 취업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년 쉼터 F: 멘토링 지원)

“이제 가정 복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후 관리를 해요. 퇴소시키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 잘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아버지 어머님께도 통화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잘 지내는지, 전에 있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청소년 쉼터 F: 사후관리)

“저희가 피해 유형을 신체, 정서, 성, 방임, 학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판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 유형이 좀 중복되거나 하는... 신체, 정서, 성이나 방임 이런 식으로 중복학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재학대 위험률이 낮다 라고 보면 저위험군, (위험률이 높다라고보면) 고위험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개입 차이가 있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 H: 사례판정)

“부모님과 자기의 분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분리 시설에 가서 좀 보호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분리보호자 절차 지원하고 있고요. 그럴 땐 이제 분리 보호할 수 있게 쉼터라든지, 청소년 쉼터로 안내해준다든지.. 학대 피해 아동 그룹홈이나 뭐 이런 데로 입소를 시켜준다든지.... 분리 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비밀 전학이나 출결 처리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H: 분리보호절차 지원)

“보호자 대상으로도 아동이 잘 지내는지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보호자에게 양육 기술을 상담해 주거나,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수급자나 장애인 등록,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절차를 지원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H: 안전점검)

“부모님들이 계신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원을.. 저희 내부적인 예산으로 긴급지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계, 기금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모금회 라든지, 법원에서 위기가정제기지원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연계 의뢰서를 넣어서 신청해가지고 선발되면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G: 경제적 지원)

“보호자가 없을 때 임시조치나 응급조치, 그리고 긴급임시조치를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이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는 거예요.” (경찰전문가 M: 긴급임시조치)

7)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센터와 쉼터 전문가들은 밀접하게 청소년들을 만나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에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나타났다.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피해 2020 과정에서 상담자의 소진 예방, 법적인 정보, 부모예방 교육 등 상담 개입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쉼터의 경우 주요 대상자인 후기 청소년 대상의 개입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위기개입의 특성상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기에 기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다양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과 효과적인 연계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신고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흐름도를 기본으로 같은 맥락에서 센터와 쉼터 종사자가 신고가 용이하도록 하는 매뉴얼의 연계성이 제시되었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 좀 더 구체적이면 선생님께서도 더 많은 걸 버티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경험하셨던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상담자 소진 예방)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상담원 분들이 전부 다 나오셔서 들어보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상담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보 제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꼭 따라야 할 때는 정말 그 때는 청소년을 돕는 거고 아버님을 돕는, 부모님을 돕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법적인 정보)

“가정폭력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들에 대한 개입,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의외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느껴지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부모예방 교육)

“경찰도 스무살이 넘어가면 성인으로 봐서 조금 이렇게 대상으로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 쉼터 F: 후기 청소년 대상 내용 포함)

“아동학대 인식 자체를 솔직히 이제 동일하게 맞춰야 협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당연히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의무자 시기도 하시고 제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데도 원활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H: 아동학대 지식에 대한 교육)

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심층 인터뷰 결과 종합

먼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피해 청소년들은 피해 직후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국민과 현장 실무자들의 가정폭력 감수성 및 청소년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청소년이 가출팸이나 노숙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쉼터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일시쉼터 등을 확대하고 ‘청소년 쉼터 찾기 앱’ 과 같은 매개체를 적극 개발, 홍보하여 위기 청소년이 상담이나 보호시설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개입 시 학대에 대한 판단, 신고의 어려움, 피해 청소년의 신고 및 개입의 거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을 설득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청소년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연계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개입 시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었다. 본 위기개입 매뉴얼의 보급 대상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인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의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교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서로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이 기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다양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성 있게 개발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업무 흐름도를 기본으로 같은 맥락에서 센터와 쉼터 실무자의 신고가 용이하도록 매뉴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도 연계기관 실무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위기개입에 있어 어려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호소하는 부분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들도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과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업무교류가 원활해야지만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친밀한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특히 제3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 심리지원 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가 인지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기개입 매뉴얼의 보급 대상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인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 교류와 피해사례 발견 시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 필요한 연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서로 잘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전문가가 호소하는 위기개입의 어려움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시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피해 청소년의 신고 및 개입의 거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회의 인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피해 청소년의 신고 및 개입의 거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와 같은 현장에서 청소년과 신뢰가 형성된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초기 신고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신고기관과 조사기관, 초기개입 기관과 사후 심리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강조된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이 피해자의 인권보호 보다는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나타난 가정 유지의 관점은 입법목적에 ‘충실한’ 사법 관계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도리어 가정을 ‘과괴’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한다. 더불어 폭력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참고 살라’고 주문하는 등 제대로 된 보호 조치 또한 이뤄지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가정폭력으로 의뢰되어 온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자녀의 문제인 아동청소년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랜 노력으로 일정부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이상 무엇보다 현행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인터뷰에서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현장의 실무자들이 그 이해도나 활용도가 낮아서 안타깝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방지법은 그 신고나 상담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나 치료 보호 등의 제도도 구비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의 징후가 청소년에게 보인다면 바로 상담 및 신고절차를 활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발견한다면, 신고는 물론, 적극적으로 법 조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을 받거나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V.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구성 원리

본 매뉴얼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안전과 발달단계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개입과 더 심각한 문제로의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매뉴얼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기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실제 폭력피해를 인지하고 청소년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제작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견한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의 효과적인 개입을 돕는다.

셋째,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피해를 예방한다.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원리에 따라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 요소들을 조직하고 그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가.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 원리

본 매뉴얼의 구체적인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사용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CYS-Net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 및 가정에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각종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전체 168,377명 중 11,511명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게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2020의 주 호소 문제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인관계문제나 진로 및 학업문제,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다른 문제로 접수된 후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 가정폭력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발굴 및 개입의 핵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 실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대응체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기개입 매뉴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이 센터 내에 없다는 응답이 59%로 보고되었고, 매뉴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약 21%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 이상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데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신고 및 연계를 통한 개입절차를 제안한다.

앞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의 심리지원 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의료, 법률, 경제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체계들을 함께 연동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통한 개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파악 및 접수에서부터 신고 절차, 신고 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와 연계기관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구성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매뉴얼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전체 개입 과정은 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와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의뢰를 하는 경우로 차별화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은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와 유관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센터로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센터에서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 청소년 전화1388 또는 개인상담 접수 등 센터와 초기 접촉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둘째, 센터에서 다른 주호소문제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과정은 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 하는 경우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안에 따른 신고 및 외부기관으로의 연계하는 개입과 연계기관에서 센터로 연계하는 경우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개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4) 피해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적 접근의 요소를 포함한다.

가족은 심리적, 법적, 경제적,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문성원, 2020) 그 폭력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피해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에 두고 가족 전반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위기개입 시 병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교육적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개입방법을 다룬다.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초안 구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초안은 앞서 제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사전 요구도 조사결과와 가정폭력 관련 현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내용,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각종 매뉴얼 그리고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 내용 등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가. 위기개입 매뉴얼의 세부 구성 내용

전체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방향을 정하고, 개입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조직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은 크게 제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의 세부 구성은 <표 13>에 제시하였다.

제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에서는 첫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에 있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 및 개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읽을거리를 소개하였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인지적, 행동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의 주 사례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체계를 도식화 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가정폭력관련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법적절차 및 처리과정과 처벌규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1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괄

구성	내용	
제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들어가며	• 읽을거리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의 • 발생원인 •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유형 및 영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 가정폭력 발생(우려)시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개입 절차 • 가정폭력 발생(우려)시 폭력 행위자 처벌·성행 교정을 위한 법적 개입 절차 •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의무와 보호

구성	내용	
제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접수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긴급 구조 육구분석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피해 접수 육구분석 및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자용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체크리스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판단 체크리스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2020자 윤리 및 피해자 지원 지침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을 위한 상담자와 기관의 역할 사례 및 Q&A 연계기관(유관기관) 정보 각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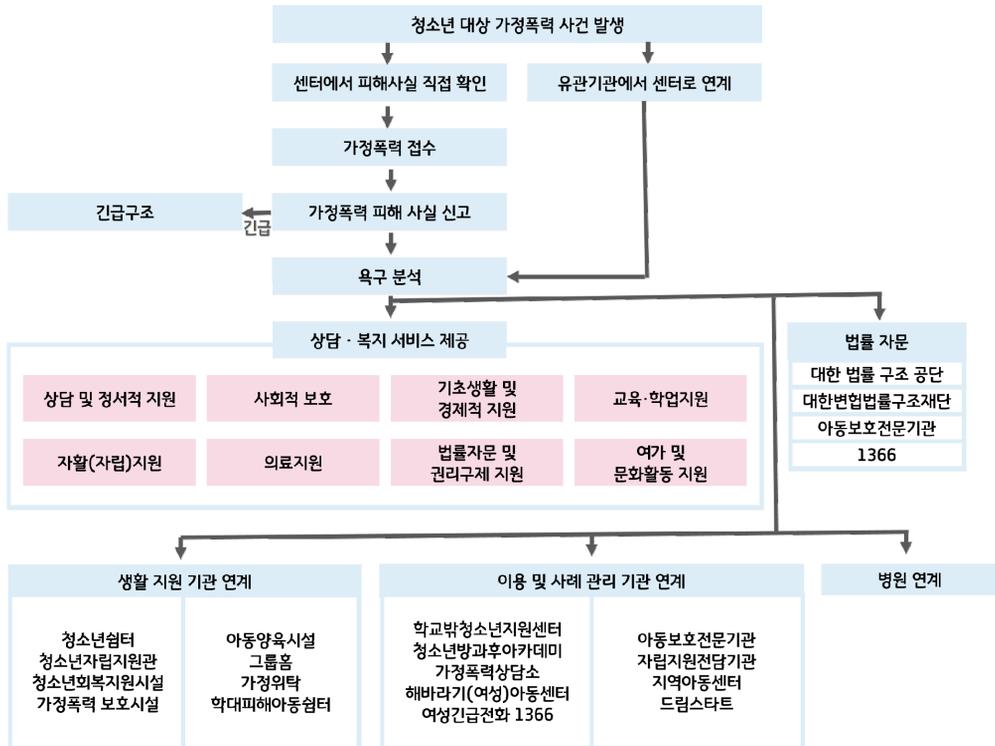


그림 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절차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 개입 과정은 전반부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과 후반부 피해 청소년 발견 직후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 및 보호, 안전 관리 등에 집중하는 실질적인 개입 단계로 이루어진다. 개입절차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흐름도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평가 및 수정·보완

본 위기개입 매뉴얼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타당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위기개입 매뉴얼 초안의 현장타당성을 검토 받기 위해 팀장 직위 이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5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개입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검증을 위하여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사 1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팀장 1인에게 위기개입 매뉴얼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내용은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과 세부 항목별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본 위기개입 매뉴얼의 전반적인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가. 위기개입 매뉴얼의 활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본 위기개입 매뉴얼이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발굴 및 위기개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본 매뉴얼의 활용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⁸⁾ 그러나 본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 (그렇다)으로 평가하였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문 중 1인이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응답)고 응답하였다.

표 14.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활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질문

내 용		
1.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 본 매뉴얼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굴·(위기)개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가정폭력 접수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긴급구조
		육구분석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위기개입 매뉴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전반적 평가에 이어 본 위기개입 매뉴얼에 항목별로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본 매뉴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론적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 등 가정폭력 개입과 관련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상담자들이 취약한 법적 절차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유용하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다. 특히 법적 절차 및 위기개입 과정에 대해 본 연구진이 구성한 흐름도는 한눈에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의견이었다. 본 연구진이 설계한 전체적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절차에 대해서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였다.

특히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예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 가정폭력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 및 개입을 돕기 위한 자료, 연계기관 및 시설현황과 연계 시 필요한 사항 등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특히 개입 단계별 구조화된 리스트와 점검사항과 사례를 활용한 개입절차 제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본 매뉴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발달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책적 영역과 법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만큼 사회보호체계 또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발생 시 서비스 지원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매뉴얼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24세를 청소년으로

정당한 만큼 사회적 통념상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위기개입 과정을 다루었다.

이러한 지문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매뉴얼의 내용		의견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의 개입으로 변화된 사례나 상담자의 책임을 강조할 만한 내용이 더 추가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유형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예시 보완 필요 예) 청소년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경우 등 • 청소년의 문제행동, 비행 등은 가정폭력 발생 원인이기도 하나 가정폭력의 결과일 수 있어 가정폭력의 원인이나 결과로 정의하기 보다는 관련요인으로 보아야 함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연계하고 있는 타 부처 산하 보호·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보완 필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4.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쉼터 등 개정된 법률 반영 • 모든 법을 다루기 보다는 신고의무자로서 알아야 할 정도의 법률과 처벌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직접 확인	1) 가정폭력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안정화 기법이나 면접 상담의 실제 등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입 안내
		2)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신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위기수준 판단 기준이 제공될 필요 • 신고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가 필요 • 부록으로 피해사실, 위험수준에 관한 구

매뉴얼의 내용		의견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화된 체크리스트 필요 외부기관 연계시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가정폭력 신고 시 증거확보 관련한 정보 제공
		3) 긴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지자체 사례관리 전담 공무원 등과 업무협조에 대한 정보도 제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례 제시
		4) 욕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구분석을 위한 구조화된 리스트나 질문지 제공 개입이나 지원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응방법
	5)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관련 개입을 위해 실행위원회나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역 기관 개입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 제시 연계기관 시설현황을 자세히 제공(도 단위 구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쉼터나 타기관 입소시 전학절차에 대한 정보 추가 타 기관 연계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례나 tip으로 제시 	
2.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관으로부터 센터로 연계시 서비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 추가 연계 받을 시 타 기관에 요청해야할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문제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청소년 발견과 위기개입의 전반적인 절차가 폭넓게 잘 정리되어 있음 가정폭력/아동학대 개입 순서·방법·절차대로 법률이나 처벌규정, 유관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음. 시설현황을 첨부하여 매뉴얼 한권으로 모든 게 제공 된다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임. 가정폭력 피해 발생시 법적절차와 위기개입 과정에 대한 흐름도가 잘 제시되어 한눈에 개입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Q&A를 추가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면 좋겠음.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는 걸 가해자인 부모가 인지하고 센터 서비스를 거부할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학대행위자와 분리 후 재학대의 위험이 있을시 대처 방법은? 이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핑계로 양육권소송이나 친권 변경 소송시 센터 	

	매뉴얼의 내용	의견
총평	<p>에서 개입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법원이나 경찰에 상담소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많은 편임. • 신고의무자인 상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구조화된 리스트에 따라 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도움이 될 것임. • 가정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센터 내에서 초기대응부터 신고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제안. 예) 상담원 또는 동반자 사례 발견 -> 담당 팀장과 사례 논의 -> 센터 내 사례평가회의를 거쳐서 센터 차원에서 신고 등 • 매뉴얼 전체에 아동과 청소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위기개입 과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 	

다. 위기개입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전문가 감수결과를 토대로 초기에 개발된 매뉴얼의 수정방향을 수립한 후 매뉴얼을 수정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수정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와 개입의 실제로 이루어진 매뉴얼의 틀을 유지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비롯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가의 자문에서 현재의 이론적 부분과 실질적인 개입부분을 구성하는 각 장의 하위 구성 내용의 현장 활용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매뉴얼의 전체적인 구성 및 하위구성도 초기 매뉴얼의 틀을 유지하였다.

둘째, ‘제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에 가정폭력 유형의 구체적인 행위 예시,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긴급구조’에 긴급구조 사례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유사 상황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셋째, 현장의 청소년상담자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4.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과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가정폭력 피해사실 신고’ 등에 최근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제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긴급구조’,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제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2.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등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시 필요한 행정절차, 서류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 하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발견시 즉시 개입하여 일차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이 2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이에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유관기관 연계를 포함한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의 전반적인 위기개입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개입 기법 안내가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가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므로 [부록]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상담개입 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여섯째,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적절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을 할 때 예외적인 상황, 상담자가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등을 Tip으로 소개하였다. 피해 청소년 및 전문가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파악한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Q&A로 추가하였다.

일곱째, 그 외에도 가정폭력 판단 및 상담자 인권감수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피해 청소년의 위기수준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평정 척도, 가정폭력 관련 법령, 유관기관 리스트, 연계 관련 각종 양식 등의 내용을 [부록]에 추가하였다.

V.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조하여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유기, 폭사,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대나 폭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끊임없는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폭력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19). 폭력의 세대간 전이로 표현될 만큼 가정폭력의 전염성은 강하며,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행동적, 사회적으로 발달을 저해 한다(김수정 & 정익중, 2013; 김정란 & 김혜신, 2014; 최혜정, 2012).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라도 모든 피해 청소년이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서적 무기력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류은주, 2019; 임지연 & 남은영, 2019) 피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지지와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와 안정되고 신뢰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청소년은 가정폭력 경험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 지지자로서 상담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결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담자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이들의 가정에 사후개입만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실질적인 개입을 하는 중요한 위기개입자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위기개입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매뉴얼이 있기는 하나 그 활용성에 있어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낮아 이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위하여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기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실제 폭력피해를 인지하고 청소년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개입 매뉴얼의 구성 원리 및 구성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현장의 상담복지 전문가를 위한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전문개입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위기개입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구성한 위기개입 매뉴얼의 초안이 개발되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초안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즉,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경우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의뢰된 경우로 개입 절차를 구분하였다. 특별히 현장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발견 시 가정폭력 피해 판단 및 신고 등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 접수 에서부터 신고 절차, 연계기관 의뢰,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등 피해 청소년의 안전과 빠른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매뉴얼 초안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위기개입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의견으로는 가정폭력 개입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법률적 절차 및 과정, 유관기관의 업무 등이 가시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바로 참고할 수 있을만한 시각적으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와 질문지 등을 제공하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국의 시설현황 및 연계기관들의 자세한 정보와 현장의 실제 개입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위기개입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본 매뉴얼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사례 발견 및 접수, 사례 판단 등 개입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기존의 사항들을 재구조화 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욕구와 협력체계를 고려함으로써, 매뉴얼의 통합성-체계성-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과정에서 상담자는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담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회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다른 상황이나 구성원이 아닌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개입자로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전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2. 논의 및 제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 현행 제도 및 개입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합하고 고찰함으로써 위기개입 매뉴얼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위기개입 매뉴얼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전문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심층적인 자문을 구하였으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개입 대상의 실질적인 욕구를 매뉴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개입절차에 대해 연구진들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세부절차를 상세화하여 매뉴얼의 즉각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하여 현장전문가들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사례, 이용 tip 등을 제시함으로써 2020자들의 개입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뉴얼 개발 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시점과 본 연구보고서의 완료

시기가 겹쳐 개정된 법령이 실제로 적용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현장의 위기개입 사례 및 관련 절차를 매뉴얼에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은 현재 시범운영 단계로 관련 사항을 매뉴얼에 담지 못했다. 또한 현재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어 향후 본 위기개입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3조4항에서는 “보호대상”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18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주무부처 및 적용 법령, 개입기관과 개입절차가 상이해 9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사업 중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는 달라진다. 이러한 분절된 아동청소년복지체계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개념의 혼동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욕구별 맞춤형 지원 및 개입 방안을 본 매뉴얼에 통합적으로 담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본 매뉴얼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위기개입 대상인 피해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위기 발생시 개입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셋째, 본 연구에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개입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의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연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올해 시행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본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추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폭력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영향은 부정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사할 지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피해와 단회에 그친 피해 그리고 가정 폭력 유형과 청소년이 가진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outcome)은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연령에 비해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가출이나 비행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 연합되어 가정폭력의 영향과 위기개입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본 매뉴얼에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이 민감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장 전문가를 위한 매뉴얼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개입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하지만, 반면에 초심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표준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유형별 위기개입 과정이나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나 호소문제 별 위기개입 매뉴얼 등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의 다차원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위기개입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의 지속적인 현장 적용과 활용성 검증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축적하고, 꾸준한 개선과 정교화 과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로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05.28).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방향.
- 경찰청. (2020). 가정폭력,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학대예방경찰 APO.
- 경찰청. (2016). 피해자 보호지원매뉴얼.
- 고기숙, & 이금옥. (2010). 가정폭력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피해자학 연구**, 18(2), 129-157.
- 고명수. (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서울 법학**, 22(2 (I)), 29 - 59.
- 김승경, 송미경, & 김미경. (2014).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mdo?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menu_nix=d35o34AE&cont_idx=467&edomweivgp=R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2(3), 1-18.
- 김정란, & 김혜신. (201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 사회연구**, 34(2), 310-333.
- 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 이현. (2014).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9(1), 81 - 101.
- 김정옥. (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인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27 - 40.
- 김지현. (2018. 01.08).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매는 체벌 미화 표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08087400004>
- 김운희. (2006).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서울: 백산출판사.
- 김화미. (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대책 방안. **아동보호연구**, 2(2), 67 - 94.
- 류은주. (201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55-84.
- 문성원. (2020). 가정내 정서적 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28(2), 1-44.

- 민소영, 김세원, & 정해린. (2019).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 경험-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1 - 37.
- 박세경. (2015).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4.
- 박대해. (2020. 06. 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치료도 국가 책임 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8532.html>
- 박순천, & 윤경자. (2020).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내담자 가족의 갈등치유를 위한 가족상담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25 - 50.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배상균. (201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59 - 96.
- 백종림, 정익중. (2013). 부부폭력목격경험과 학대경험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29(1), 121-142.
- 변미희, & 이무영. (2003). 1999 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의 정책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1), 51 - 67.
- 보건복지부.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2].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매뉴얼.
- 신나래. (2019).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쉼터거주 피해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4), 119-150.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 - 182.
- 심의선, & 최정민.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직장 행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복지정책**, 46(1), 5 - 31.
- 아동권리보장원. (2017).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아동권리보장원 (2019a).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권리보장원. (2019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 이상균, 장화정, 김수린, 김경희, & 김미경. (201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
- 이승주, & 정병수. (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 - 250.
- 이주연. (2016).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1, 96 - 109.
- 이진희. (2015). 부부폭력의 지속적 노출경험이 청소년 자녀 우울의 중단적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적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135 - 155.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주. (2017).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창호, 권혜수, 조은경 (2002). 폭력가정 아이들의 실태분석. 제 23회 특수상담사례발표 연구발표회 '폭력가정의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충권, &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 - 55.
- 임지연, & 남은영. (2019). 부모 간 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 상위정서 철학 및 우울 간의 관계 : 청소년 상위정서 철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105-123.
- 장희숙. (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쉼터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정윤경, 김혜진, & 김정우.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4), 79 - 100.
-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 문명재. (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 - 298.
- 조웅형, 박종민, 김태언, & 이규열. (2020. 10. 17). 경찰-아동기관-주민센터, 입양아 사망막을 '3각 방패'에 구멍.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64206/1>
- 천정환. (2010).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한국효학회**, 12, 1-33
- 최진영, & 김기현. (2019).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이 아동의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101 - 133.
- 최혜정. (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 - 182.

편집부 기자. (2019.07.16.).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7월 16일(화)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Medical News.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224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20.05.28).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017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윤희. (2019.11.04.). 갈 곳도, 잘못도 없는 - 자립 정착금 없는 청소년쉼터 퇴소생들 주거환경 열악-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800.html

허인영. (2017).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청소년 또래에 의한 정서폭력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9(2), 63-88

Wee프로젝트. (2020). 사업소개.

Appel, A. E., & Holden, G. W. (1998).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78.

Breslau, N., Davis, G. C., Andreski, P., & Peterson, E. (1991).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n urban population of young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3), 216 - 222.

Briere, J., & Runtz, M. (1993). Childhood sexual abuse: Long-term sequelae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3), 312 - 330.

Darwish, D., Esquivel, G. B., Houtz, J. C., & Alfonso, V. C. (2001). Play and social skills in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during peer interactions. *Child Abuse and Neglect*, 25(1), 13-31.

Edleson, J. L. (1999). *Problems associated with children's witnessing of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Online Resources.

Eisenberger, R., Cummings, J., Armeli, S., & Lynch, P. (199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discretionary trea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812 - 820.

- Emery, C. R. (2011). Controlling for selec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behavior problems and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8), 1541 - 1558.
- Fantuzzo, J. W., & Mohr, W.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 - 32.
- Graham-Bermann, S. A., & Hughes, H. M. (2003). Intervention for children exposed to interparental violence (IPV): Assessment of needs and research prioriti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189 - 204.
- Howe, T. R., & Parke, R. D. (2001). Friendship quality and sociometric status: Between-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loneliness in severe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5(5), 585-606.
- Jouriles, E. N., McDonald, R., Slep, A. M. S., Heyman, R. E., & Garrido, E. (2008). Child abuse in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Prevalence, explanations, and practice implications. *Violence and Victims*, 23(2), 221 - 235.
- Katz, L. F., Stettler, N., & Gurtovenko, K. (2016). Traumatic stress symptoms in children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Social Development*, 25(1), 47-65.
- Kernsmith, P. (2006).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family of origin violence on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2), 163 - 171.
- Kolko, D. (1992).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44 - 276.
- Lichter,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4), 344 - 357.
- McGuigan, W. M., & Pratt, C. C. (2001). The predictiv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5(7), 869 - 883.
- Murphy, C. M., & Carscard, M. (1993).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abuse in marriage*. In R. L. Hampton, T. P. Gollotta, G. R. Adams, E. H. Potter, & R.
- Parker, J. G., & Herrera, C. (1996). Interpersonal processes in friendship: A

- comparison of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s exper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25-1038.
- Renner, L. M., & Boel-Studt, S. (2017). Physical family violence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4), 474.
- Stover, C. S., Ippen, C. G., Liang, L.-J., Briggs, E. C., & Berkowitz, S. J. (2019). An examination of partner violence, polyexposure,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in a sample of clinically referred youth. *Psychology of Violence*, 9(3), 359 - 369.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Sudermann, M., & Jaffe, P. (1997). *Children and youth who witness violence: New directions in intervention and prevention*. In D. A. Wolfe, R. J. McMahon, & R. D. Peters (Eds.), *Banff international behavioral science series, Vol. 4. Child abus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across the lifespan* (p. 55 - 78). Sage Publications, Inc.
- van Rosmalen-Nooijens, K. A. W. L., Lahaije, F. A. H., Lo Fo Wong, S. H., Prins, J. B., & Lagro-Janssen, A. L. M. (2017). Does witnessing family violence influenc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of Violence*, 7(3), 343.
- Winstok, Z. (2007). Toward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348-363.
- Wolfe, D. A., Crooks, C. V., Lee, V., McIntyre-Smith, A., & Jaffe, P. G. (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and critiqu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171 - 187.
- Wolfe, D. A., Jaffe, P., Wilson, S. K., & Zak, 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5), 657.

부 록

-
1.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전 요구도 조사 문항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층 인터뷰 질문지
 3. 아동 및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위기개입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문지
 4. 위기개입 매뉴얼 초안에 대한 자문 및 평가지
-

질문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질문 15: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 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예: 가정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유형별 대응 방법,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 신고 절차 및 신고시 유의사항)

질문 1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형식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층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및 연구윤리 안내>

안녕하세요.

-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인터뷰임에도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고서 받은 사회의 도움 및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 인터뷰에 대한 녹음자료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분석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구의 결과는 윤리적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언론에 발표될 수 있으며, 귀하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각색 및 삭제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표된 내용은 귀하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 인터뷰 중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응답하기 힘들 경우에는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인터뷰 후 추가적인 상담개입에 대해 담당 상담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 4-2-2.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떻게 도움받길 원했나요?
- 4-3.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웠나요? (or 신고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4-4.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것(필요한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5.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상담을 받은 경우>

- 5-1.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ex.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기관을 접함, 가정폭력전문기관의 연계 등)
- 5-2.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어떻게 도움받길 원했나요?
- 5-3.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or 새로이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었나요?
- 5-4.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 나아진 것 같았나요? (ex. 상담자가 공감해줌,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줌 등)
- 5-5. 가정폭력 피해 상담에서 아쉬웠던 점 (ex. 피해경험에 대해 떠올리는 것, 상담 의욕 부족 등)은 무엇이었나요?

6. [공통]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6-1.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나요? (회복하고 있나요?)
- 6-2. 피해 회복을 위해 당신이 노력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ex. 취미생활, 힘들 때마다 심호흡하기, 자조집단모임 참석하기 등)
- 6-3. 피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ex. 상담, 부모와 분리, 친구, 가족, 종교 등)은 무엇이었나요?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점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 6-4. 컴퓨터에서의 생활이 가정폭력 극복에 도움이 되었나요?
- 6-5. 회복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or 상담 전과 후, 컴퓨터 오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것 같나요?)
- 6-6. 앞으로 도움받고 싶은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 6-7.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7.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경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어떤 의미가 있나요?)

※ 인터뷰 진행상황에 따른 추가질문

- 학교생활을 어떤가요? - 친구관계는요?
- 비행이나 가출 경험은 있나요?
-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은 있나요? - 있다면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부록 3]

아동 및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위기개입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담(심리)학 ② 사회사업(복지)학 ③ 교육학 ④ 청소년학 ⑤ 아동(복지)학
⑥ 기타()

3. 귀하가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

4.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팀원급 ② 팀장급 ③ 부장급 ④ 기관장 ⑤ 청소년동반자 ⑥ 기타()

5. 귀하의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6. 귀하가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사례는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사례 ② 1사례 이상 ~ 3사례 미만 ③ 3사례 이상 ~ 5사례 미만
④ 5사례 이상 ~ 10사례 미만 ⑤ 10사례 이상 ~ 15사례 미만
⑥ 15사례 이상 ~ 20사례 미만 ⑦ 20사례 이상

7.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주제의 교육이었나요? 교육에서 도움을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

□ 공통질문

1. 귀하가 주로 경험했거나 개입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피해 유형
(예: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부모 간 폭력, 형제간 폭력 등)
- 피해 청소년의 주된 호소문제/희망하는 서비스
(예: 신체적 피해 정도 확인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가해자 처벌 및 격리를 위한 법률지원,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 질문

2. 센터에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굴하나요?

구분	질문내용
가정폭력 피해로 직접 센터에 찾아온 경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오게 되었나요?
다른 문제로 상담과정 중에 가정폭력 피해 문제가 나온 경우	상담 중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피해경험에 대해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타기관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	어떤 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의뢰했나요? 그 기관에서 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인지했나요?

3.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피해 청소년 발굴 경로에 따라 개입 차이(의뢰 / 1388로 발굴 / 상담 시 발굴)
- 피해 유형에 따라 개입 차이(폭력 / 방임 / 언어폭력 등)
- 외부기관과 연계(연계기관의 종류 / 연계기준 / 연계절차 / 효과적 연계의 이유 / 비효과적 연계의 이유 / 사후관리)
- 가정폭력 신고 경험(신고절차 / 신고결과 / 신고 시 필요한 도움 / 신고 관련 갈등경험)
- 피해 청소년 개입의 효과적인 점

- 피해 청소년 개입의 어려운 점(개입 거부 / 가폭으로 판정 곤란 등)
- 피해 청소년 개입에 수정·추가해야 할 점

4.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어떤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센터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상담·복지서비스
- 피해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제공 서비스(피해부모/목격부모/가해부모)
-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상담·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과 그 이유
-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담·복지서비스 중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담·복지서비스와 그 이유
-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담·복지서비스 중에서 비효율적인 것과 그럼에도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유

5.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나요?

- 센터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교육에서 효과적인 점
- 센터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교육에서 수정·추가해야 할 점
-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과 효과적인 점
-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에서 수정·추가 할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청소년 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질문

2. 소속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굴하나요?

3. 소속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피해 청소년 발굴 경로에 따라 개입 차이(기관에서 발굴 / 외부기관에서 의뢰)
- 피해 유형에 따라 개입 차이(폭력 / 방임 / 언어폭력 등)
- 유관기관과 연계(연계 기관의 종류 / 연계 기준 / 연계 절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센터로 피해 청소년을 연계할 때 기대하는 서비스의 내용 / 센터에서 연계 받은 피해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 센터와 효과적 연계의 이유 / 센터와 비효과적 연계의 이유 / 센터와 연계 사후 관리)
- 가정폭력 신고 경험(신고절차 / 신고결과 / 신고 시 필요한 도움 / 신고 관련 갈등경험)

4. 소속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소속기관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 피해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제공 서비스(피해부모/목격부모/가해부모)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상담사)들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매뉴얼의 요소(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절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아보전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

□ 경찰, 변호사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유경험자 대상 질문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기준이 있나요?
 - 연계기관의 종류
 - 연계기준
 - 연계절차
 - 센터로 피해 청소년을 연계할 때 기대하는 서비스의 내용
 - 센터로 연계할 때 어려움
 - 센터로 연계이후 사후관리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4. 센터에서 가정폭력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신고절차(신고인, 신고대상, 신고내용 등)
 - 필요서류

[부록 4] 위기개입 매뉴얼 초안에 대한 자문 및 평가지

‘가정폭력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중간 평가 서면자문

○ 본 매뉴얼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 본 매뉴얼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발굴·(위기)개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센터에서 가정 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가정폭력 접수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긴급구조					
	육구분석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분		원안	수정안
1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 · 지원 체계		
	4.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2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 확인	1) 가정폭력 접수	
		2)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3) 긴급구조	
		4) 욕구분석	
		5)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2.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총평			

Abstract

The term domestic violence is defined by law as “actions inflicting physical or psychological harm or damage to the property of family members” . With the intent of protecting youth from a wide range of possible abuse and violence, the law defines domestic violence broadly to include not only assault or inflicting bodily injury, but also abandonment, hard labor, intimidation, defamation, and destruction of/damage to property. Despite consistent efforts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cases is increasing every year. Even worse, adolescent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re more likely to be trapped in the cycle of violence called intergenerational transfer and experience difficulties in physical, emotional, behavioral, and interpersonal development.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child abuse incidents occur within the fami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 out to address increasing demand from youth counselors for a tool to combat domestic child abuse and protect the victims. We aimed to develop a practical manual that can be adopted in the field. The manual was developed in three phases—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he planning phase consisted of a review of existing manuals, a survey on counseling professional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victims as well as with practitioners at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s. First, we reviewed existing manuals and guidelines on domestic violence developed by other organizations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study including notabl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next step was a demand survey, which was conducted on a total of 370 professionals at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s. Only 4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 manual in place, while 59% said they don’ t have any manual and 98.2% responded they feel a need for a manual. We also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14 counselors who had experience working with child abuse victims, along with 4 adolescents who were staying in shelters after suffering from domestic abuse. The interviews were performed individually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open-ended questions. The result was then analyzed and categorized using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MAXQDA 2020.

Interviews with the counselors produced 8 categories to include types of domestic violence, associated problems, progression routes and related organizations, challenges for intervention, interagency cooperation, provided services, and suggestions for content of the manual. Interviews with the adolescents produced 5 categories to include types of domestic violence, contributing factors causing domestic violence, response after victimization, help from others after abuse, and required resources.

In the design phase, we constructed a model and content by outlining principles of composi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manual.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principles were laid out: First, the target audience of this manual is working-level professionals of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s. Second, the manual includes reporting and referral as part of intervention proces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assistance for victims of domestic child abuse. Third, the manual differentiates intervention procedures for cases directly identified by a counseling center and for those referred to the center by other institutes. Finally, the manual covers training and counseling for families of the child victim.

In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hase, we had our manual reviewed by 7 experts from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s, the Children and Juvenile Sec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manual's organization and content, we identified a need for a structured checklist and questionnaire that can be readily used. In consultation with the KNPA that plays a vital role in interagency cooperation, a particular focus was placed on assisting counseling centers in securing accurate information.

Our study makes several meaningful contributions with the manual it presents. First, the manual provides practical content that can be readily adopted by practitioners when working with victim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identifying a case to intake and assessment. Second, it covers interagency cooperation as an integral part, allowing for a comprehensive and seamless support for a client. Third, this manual specifically targets adolescents ages 9 to 24, which has more value for counseling centers considering that most existing manuals on domestic violence had focused on helping younger children.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d was the fact that laws concerning domestic violence evolve constantly to address this critical problem. As we we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manual,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was revised and took effect on October 1. Due to the timing issue, we were unable to touch upon intervention cases and procedures that can reflect the changes of the revised law. Further work needs to be done to update the manual accordingly. Follow-up studies are also required to actually test the manual in practice and examine its effectiveness.